

## 2012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

1. 근거 : 학칙 제69조(학칙개정)

2. 개정이유

- 1) 시간강사제도 개선에 따라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 
(시간강사→강사 : 교직원에 포함)
- 2) 기타 학사 관련 사항

3. 주요골자

- 1) 시간강사 폐지에 따른 강사제도 도입으로 교직원에 포함
  - 고등교육법(제14조(교직원의구분)제2항: 강사포함, 제14조2(강사) 개정)에 의거
  - 교원에 포함하므로 정관변경(예정)을 통해 임면
- 2) 기타 학사 관련 사항

4. 의견제출기간 : 2012.11.28(수) 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

5. 개정안공고기간 : 2012.11.22-28

2012. 11. 22.

승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